

경희대학교 교수의회 회칙

개정일: 2018.11.3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교수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수호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교수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경희대학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 또는 건의한다.

- ① 학교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교육, 연구 및 교수의 권익과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 ③ 대학평의원에 관한 사항
- ④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
- ⑤ 총장의 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⑥ 주요 보직 교수 및 산하 기관장의 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결정의 효과)

본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전체 교수의 의사로 본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교원은 본인의 가입 의사 표명과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자격을 정지한다.
단, 미납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시부터 자격을 회복한다.

제3장 본회의 구성

제 7조 (본회의 구성 및 지회 등의 설치)

- ① 본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본회는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의학계열 지회를 설치한다.
- ③ 본회는 단과대학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 (지회 구성의 변경)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전체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회의

제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본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총회와 지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지회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 50인이상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총회의 기능)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
 2. 본회 의장의 선출
 3. 본회 의장의 탄핵
 4. 감사의 선출 및 탄핵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항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에 건의한다.
 1. 학교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 연구 및 교수의 권익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보직교수 및 산하기관장의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항

제11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 ① 총회는 유효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은 다른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출석의 위임은 의결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기타 총회의 투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지회의기능)

지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지회 의장의 탄핵
- ② 지회 예산 및 결산

제5장 대의원회

제13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대의원회는 전체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대의원회와 지회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지회대의원회로 구성된다.
- ② 전체 대의원회는 본회의의장, 지회의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의장이 의장이된다.

- ③ 지회 대의원회는 지회의 의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회의 의장이 의장이된다.
- ④ 전체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성된다.
- ⑤ 정기대의원회는 의장이 분기별로 소집한다.
- ⑥ 임시대의원회는 다음의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 2.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경우
 - 3. 감사2인의 서면요구가 있는경우
- ⑦ 임시대의원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

제14조 (대의원의 자격과 선출)

- ① 대의원은 평교수중에서 선출한다.
- ② 대의원은 교무위원 등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직을 맡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③ 분회는 대의원 임기종료 1개월 전 차기대의원을 선출한다.
- ④ 분회 대의원의 수는 교수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지회의 대의원수는 전체 대의원수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분회의 대의원수는 지회의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대의원의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대의원의 유고, 기타의사유로 결원이 생기거나 지회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회는 1개월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정당한사유 없이 대의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지회 대의원회는 분회에 대의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 (대의원회의 기능 및 권한)

-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상정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 2. 의장, 지회 의장 및 감사의 탄핵안
 -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사항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1. 본회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대학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의장, 지회의장 및 감사의 탄핵안
 -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항

제17조 (대의원회의 성립과 의결)

-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 경우 출석은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될 수 있다.
- ② 대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대학 평의원의 선출)

- ① 대의원회는 경희대학교 대학 평의원을 선출한다.
- ② 대학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위원회)

- ① 대의원회는 그산하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청원위원회로 한다.
- ③ 기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임원

제20조 (임원의 구분과 임기)

-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의장 1인
 - 2. 지회 의장 2인
 - 3. 감사 2인
 - 4. 사무총장 1인 및 사무차장 2인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동일한 직을 연임할 수 없다.
- ③ 현직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 의장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회의 임원이 교무위원 또는 부속기관의 장에 임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직을 상실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출)

- ① 의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지회 의장은 본회의장이 선거전에 지명하는자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장은 그의 소속 지회 의장을 겸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2인을 당선자로 한다.
- ④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의장이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 회의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⑤ 임원의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선거에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탄핵)

-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탄핵이 성립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기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
- ② 탄핵이 발의된 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정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23조(임원의 보궐)

- ① 의장의 유고시에는 지회 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그 순서는 지회 의장 중 경희대학교 재직기간, 연령순으로 한다.
- ② 의장의 유고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이상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 지회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그 순서는 전향과 같다.
- ③ 지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되 차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임무)

- ①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② 지회 의장은 본회의 의장을 조력하며, 소속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고유업무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 ③ 감사는 본회 및 소속 지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④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각각 본회의 의장과 지회의 의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 일반 및 기타 관련사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재원)

- ① 본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7조 (회칙의 개정)

- ① 본회의 회칙의 개정안은 의장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로 대의원 회의 의결로써 발의 한다.
- ②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8조(시행세칙)

- ① 본회의 운영은 이 회칙에 의하되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단 시행세칙은 상위근거 회칙의 목적에 부합 되어야 한다.
- ② 시행세칙은 대의원 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29조 (규정및지침)

의장은 회칙 및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규정 및 지침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단, 규정 및 지침은 상위근거 회칙 또는 세칙의 목적에 부합 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다수결로 확정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회의 제 1기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는 회칙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본회의 제 1기임 원의 임기는 1989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본 회칙의 개정안은 서기 1999년 2월 26일부터 회칙개정의 절차를 마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의 절차를 마치고 14대 교수의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의 절차를 마치고 15대 교수의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본 회칙은 회칙 개정의 절차를 마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18.11.30)